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02. 21.

김향숙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03.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3. 21.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최두임 의원)

가. 제안이유

-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12호
 - 예고기간: 2024. 3. 4.(월) ~ 2024. 3. 11.(월)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고성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 제3조)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3. 21.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